
대관규정

대관규정

제정	2000.	7.	1
개정	2001.	3.	16
개정	2002.	2.	2
개정	2002.	11.	18
개정	2003.	10.	16
개정	2004.	12.	21
개정	2006.	3.	24
개정	2006.	7.	19
개정	2007.	3.	29
개정	2007.	9.	17
개정	2007.	12.	17
개정	2008.	3.	26
개정	2010.	8.	19
개정	2011.	9.	19
개정	2012.	9.	6
개정	2012.	11.	22
개정	2013.	3.	15
개정	2013.	12.	26
개정	2014.	6.	12
개정	2014.	10.	16
개정	2015.	8.	27
개정	2016.	3.	28
개정	2017.	12.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회관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11.18, 2004.12.21)

1. 기본시설 : 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 [세종S씨어터](#),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관, 한글갤러리, 광화랑 및 기타 부속시설 (개정 2001.3.16, 2002.2.2, 2006.3.24, 2006.7.19, 2007.3.29, 2007.12.17, 2010.8.19, 2012.9.6, 2014.10.16, [2017.12.26](#))
2. 부대시설 : 데크플라자 옥외 공간과 기타 부속시설(개정 2002.2.2, 2006.7.19)
3. 삭제(2004. 12. 21)

제3조(대관신청) ① 제2조의 시설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기간은 회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정기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대관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대관심사위원회) ① 대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3.12.26, 2015.8.27)

- ② 제3조 제3항 정기 및 수시대관시 위원장을 심사당일 외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1.9.1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 제5조(대관승인)** ① 사장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장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대관계약서는 내규로 정한다.

- 제6조(사용시간)** ① 회관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사용료 등)**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②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 회관 시설 중 공연과 관련되지 않는 연습대관과 부속시설 사용시의 대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내규로 정한다.
- ④ 삭제(2008. 3. 26)
- ⑤ 삭제(2008. 3. 26)

- 제8조(입장권의 발행)** 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사용료 특례)** ① 삭제(2008. 3. 26)

-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 3.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계약금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개정 2006.3.24, 2006.7.19, 2007.12.17, 2008.3.26, 2015.8.27, [2017.12.26](#).)
 - 가.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미술관

해지시점 대관기간	사용예정일로부터 120~17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180~23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240~29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300일 이상 전
1일 ~ 7일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납부한 계약금 중 90%
8일 ~ 14일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15일 ~ 27일	반환 안함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28일 이상	반환 안함	반환 안함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나. 세종체임버홀/기타

사용예정일로부터 120~17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180~23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240~299일 전	사용예정일로부터 300일 이상 전
납부한 계약금 중 30%	납부한 계약금 중 40%	납부한 계약금 중 60%	납부한 계약금 중 90%

다. 사용예정일부터 119일 이내 수시대관 승인을 받고 대관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회관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대관계약금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

공연장	대관 기간	해지시점 및 반환금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1일 ~ 7일	사용예정일부터 90일 ~ 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30%
	8일 ~ 14일	사용예정일부터 90일 ~ 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25%
	15일 ~ 27일	사용예정일부터 90일 ~ 119일 이내/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20%
	28일 이상	사용예정일부터 90일 ~ 119일 이내/ 반환 안함
체임버홀		사용예정일부터 60 ~ 89일 이내 /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20%
		사용예정일부터 90 ~ 119일 이내 / 납부한 대관 계약금 중 30%

라. 수시대관 승인통보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대극장·M씨어터·S씨어터 90일 이내, 체임버홀 60일 이내일 경우 대관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대관사용료 중 50%를 반환한다.(개정 2017.12.26)

4. 연습실 및 무대시설물 등 대관인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한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 사용료

제10조(대관신청제한, 사용취소 · 제한 및 신청자격정지) ① 회관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한다.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6.3.28)
-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4.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5.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7. 행사성 공연 대관 신청의 경우(신설 2008. 3. 26)
 8. 세종체임버홀 행사 대관 신청의 경우(신설 2008. 3. 26)
 9. 기타 회관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사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 졌을때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3. 이 규정이 정한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회관의 승인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5. 대관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개정 2016.3.28)
 6.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 ③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사장은 그 행위 사실이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하 범위내에서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7. 19)
1. 회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단체가 대관승인통보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단, 체임버홀은 대관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사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5.8.27)
 3. 회관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4.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5.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
 6.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대관자가 회관의 승인없이 대관내용을 임의변경하여 대관사용한 경우
- (전문개정 2004. 12. 21, 개정 2016.3.28.)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

대하지 못한다.

제11조의2 (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2. 2. 2)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우리 회관(무대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2. 2. 2, 개정 2012.11.22)

③ 사장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 2. 2)

④ 사용자가 우리 회관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2. 2. 2)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우리 회관 무대안전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신설 2002. 2. 2, 개정 2012.11.22)

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장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2002. 2. 2)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 고자 할 때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회관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회관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입장제한) 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회관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사장이 안전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배상책임) ① 회관은 사용자의 제10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회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회관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회관과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관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제15조(적용규정) 이 규정은 회관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00.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 되었거나 사용신청한 자로서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사용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사용료 및 계약조건은 당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0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년도 대관(사용일 기준)은 이전 규정을 적용받으며, 세종체임버홀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7.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명칭은 타 내규 등에 일괄 적용한다.

부 칙 (2008.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년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이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0.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명칭은 타 규정 및 내규 등에 일괄 적용한다.

부 칙 (2011.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 의거 변경된 사항은 2014년 대관(사용일기준)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사용료 등)은 2015년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사용료 등) 별표1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적용하고, 별표2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대관사용일 기준부터 적용하며, 단, 별표2 적용 시 별표1은 삭제하며, 이 규정 시행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대관료 및 계약조건은 당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14.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6.1.1)

<별표 2> (신설 2014.6.12, 2015.8.27)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사용료 (2016년 이후)

1. 기본시설사용료 (개정 2003.10.16, 2006.7.19, 2007.3.29, 2007.9.17, 2007.12.17, 2008.3.26,
2013.3.15, 2014.6.12, 2015.8.27, **2017.12.26.**)

○ 공연대관

(단위: 원, 부가세 별도)

구분	분류	사용료(1회)
대극장	전통분야 (국악, 전통무용 등)	4,000,000
	오페라, 발레, 무용	4,500,000
	클래식	4,500,000
	뮤지컬, 재즈, 크로스오버, 행사(정부, 서울시행사)	7,500,000
	대중음악	7,500,000
M씨어터	전통분야 (국악, 전통무용 등)	1,000,000
	종합구성물	1,200,000
	대중가수, 재즈 등 종합구성물 외	1,200,000
	행사	2,400,000
체임버홀	모든공연	1,100,000
S씨어터	모든공연	850,000

○ 공연 준비 및 철수대관료

(단위: 원, 부가세 별도)

구분	분류	오전 (09시~12시)	오후 (13시~17시)	야간 (18시~22시)
대극장	전통분야 (국악, 전통무용 등)	2,000,000	2,000,000	2,000,000
	오페라, 발레, 무용	2,700,000	2,700,000	2,700,000
	클래식	2,250,000	2,250,000	2,250,000
	뮤지컬, 재즈 크로스오버, 행사 (정부, 서울시행사)	4,500,000	4,500,000	4,500,000
	대중음악	4,500,000	4,500,000	4,500,000
M씨어터	전통분야 (국악, 전통무용 등)	500,000	500,000	500,000
	종합구성물	600,000	600,000	600,000
	대중가수, 재즈 등 종합구성물 외	600,000	600,000	600,000
	행사	1,200,000	1,200,000	1,200,000
체임버홀	모든공연	550,000	550,000	550,000
S씨어터	모든공연	420,000	420,000	420,000

○ 방송, 영화 등 촬영 대관료

구분	사용료(1회) *3시간 기준	비고
대극장	8,000,000	
M씨어터	4,000,000	
체임버홀	4,000,000	
S씨어터	850,000	

※ 기타사항

1. 세종대극장 공연에 한하여 15일을 초과하여 공연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매회 기본대관료의 30%를 할증 적용. 단, 국내 창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2. 철야 시간대 (23시~08시) 공연 준비 및 철수 대관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3.12.26, 2017.12.26.)
3. 삭제(2017.12.26.)
4. 공연 종료 후 철수작업을 1시간 이내에 완료할 경우 별도의 대관료는 없음. 단, 철야 시간대 (23시~08시)에 철수 작업시에는 위 2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12.26.)
5. 기본대관료 포함 사항
 - 해당 극장 기본 조명, 냉난방
 - 출연자 분장실 및 공통시설 및 공간
 - 하우스 매니저 등 공연장 안내 서비스
 - 기본 기술스태프

○ 전시대관(개정 2010.8.19, 2012.9.6, 2014.10.16, 2016.3.28)

(단위:원, 부가세 별도)

시설명	면적(m ²)	대관료(1일)	대관료(1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지상1층)	686	1,024,000	7,168,000	1. 기본 1일 9시간 30분 사용 2. 개관시간 11:00~20:30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관(지하1층)	609	780,000	5,460,000	

※ 부대설비 및 추가 사용료는 내규에 따른다.

※ 기타사항

미술관 대관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입장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전시의 경우 표와 같이 대관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할증율 적용한다. 대관기간이 익년도까지 이월된 경우에도 동일 전시로 간주하여 할증율 적용한다.

적용일수	할증율
1일 ~ 30일	기본대관료의 20%
31일 ~ 60일	기본대관료의 30%
61일 이상	기본대관료의 50% 할증

2. 부대시설 사용료(개정 2006.7.19)

시설명	사용료(기준가)	비 고
테크플라자	400,000원	1. 기본 1회 4시간 기준 2. 전기요금 : 실비산정 (한전 전력 요금에 따라 결정) 3. 방송, 영화, CF 제작을 위한 기타 옥외시설(공간) 대관료는 내규로 정한다.
※ 추가 사용료 및 준비(장치), 연습을 위한 대관료는 내규에 따른다.		

3. 부속시설 사용료 (개정 2004.12.21, 2006.7.19, 2007.9.17, 2008.3.26)

구분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료(기준가)	비 고	기본 4시간 기준
연습실	연습실 준비	200,000원	-	
대극장 VIP룸	공연	1,200,000원	단일공연에서 동일인이 사용시 2회차 30%, 3회차 이후 50% 할인	
귀빈실	공연	100,000원	상동	

※ 공통 : 부가가치세 별도

4. 삭제 (2004. 12. 21)